

[사 건 명] 행심 2013-4

##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4. 청구인 ○○○에게 내린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교내봉사 1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폭력에 대해 2013. 4.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13. 4. 4.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에 의거 서면사과, 협박및 보복행위금지, 교내봉사1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2013. 4. 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3. 5.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에 대한 종이조각을 던졌지만, 이는 장난으로 던진 것이고, △△△의 신체에도 닿지도 않았고, △△△이 인지도 하지 못하였던 만큼,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기에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2013. 3. 27. 진술서 작성당시 진술서를 작성하는 이유와 설명 등의 절차 없이 작성을 지시하여 어떠한 내용을 작성할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고, 무조건 △△△과 관련하여 작성하라고 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상의 부작위나 진행상의 부작위가 법령에 위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이 장난으로 △△△ 주변으로 종이를 던졌다고 주장하나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같은 반 다수 학생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고의로 던졌고 △△△의 어깨와 등에도 맞았으며, 학급 학생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 주변에 종이공을 던졌을 때 깜짝 놀라는 모습을 유도한 사실이 명백하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자리를 마음대로 바꿔서 바로 옆에 있지도 않은 △△△에게 종이공을 던졌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만큼, 청구인의 행위는 의도적 반복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이다.
- 나. 2013. 3. 27. 청구인 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인 행동과 언사는 전혀 없었고 △△△과 관련하여 한 행위가 있을 경우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말만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강요된 행위가 없었다.

다.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운영상과 진행상의 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하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전 집단 따돌림과 관련하여 담임선생님 상담자료, 조사자료 및 생활상담부 조사자료가 70여쪽의 많은 분량으로 이를 수차례 반복하여 검토한 뒤 청구인을 단순가담자로 구분한 것이며 단지 학생 진술서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치위에 회부한 것은 아니고, 2013. 4.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시 피청구인은 직접 가담자 8명의 개별 질의응답으로 3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되어 단순가담 학부모님들은 모두 같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협의가 되었으며, 2013. 4.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9명의 단순가담 보호자들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분명히 제공하였고, 선도라는 것은 무조건 무혐의 처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며,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충분한 협의와 학생들의 사실여부, 고의성, 학기초라는 특수성, 사안의 심각성, 가해자의 반성여부, 피해학생 학부모의 종합적인 의견들을 판단에 적용하여 정당하게 처분하였고, 회의록은 3시간이 넘는 시간을 모두 글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녹음파일을 참고하여 중요한 회의내용만 기록하였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 2. 판 단

###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이 사건 사고는 2013. 3. 26. △△△의 담임교사가 학생상담과정에서 △△△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여 접수되었으며, 학교폭력 사안은 폭행이고, 가해학생은 청구인외 8명, 피해학생은 동급생 △△△이다.
- 2)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 3. 일자 불상경 교실에서 △△△ 을 상대로 2-3차례 종이조각(또는 종이공)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 3) 피청구인은 2013. 4. 2.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13. 4. 4. 서면사과, 협박및 보복행위금지, 교내봉사1일의 처분을 하였다.
- 4) 이 사건 처분은 2013. 4. 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3. 5.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에 대한 종이조각을 던졌지만, 이는 장난으로 던진 것이고, △△△의 신체에도 닿지도 않았고, △△△이 인지도 하지 못하였던 만큼,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실에 있었던 다른 가해학생들의 진술서를 종합하여보면, 위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장난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가해학생들과 함께 △△△에 가한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은 단순히 청구인과 △△△간의 단순한 폭력이 아닌 학급 반 친구들 상당수가 △△△을 상대로 한 ‘따돌림’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청구인이 가담한 만큼, 비록 청구인의 행위가 다른 가해학생들에 비하여 경미하고, 청구인과 △△△간에 화해가 되어 이 사건 이후 서로간에 별문제가 없으며, △△△이 처벌 불원또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지라도 위 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진술서 작성당시 진술서를 작성하는 이유와 설명 등의 절차 없이 작성을 지시하여 어떠한 내용을 작성할지에 대하여 전혀 알수 없었고, 무조건 △△△과 관련하여 작성하라고 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위 청구인이 작성한 내용을 보더라도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진술서를 작성하는 이유와 설명 등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자치위원회 운영상의 처분 부작위나 진행상의 부작위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한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론하고 있는 자치 위원회 운영상의 부작위나 진행상의 부작위가 있었는지는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도 살펴보면, 이 사건 서면사과, 협박및 보복행위금지, 교내봉사1일의 처분은 이 사건 학교폭력에 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경한 조치이고, 청구인의 가담정도, △△△과 청구인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적절한 처분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단순 청구인과 △△△과의 개인적인 차원의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해학생들과 함께 가담한 심각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순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